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2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다자녀 가구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완화(성 일종의원안)	3

I. 개요

1.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12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성일종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4. 25.
- (3) 회 부 일 : 2025. 4.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다자녀 가구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완화 (성일종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승용자동차 (제18조제1항제3호) ○ 장애인 구입 차량(500만원 한도,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 ○ 환자 수송 전용 차량 ○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 기업부설연구소, 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 - 18세 미만의 자녀 <u>3명 이상</u> 양육자(300만원 한도)	☐ 면제 기준 완화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 - 18세 미만의 자녀 <u>2명 이상</u> 양육자(300만원 한도)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성일종의원안 2025. 4. 25. 발의(의안번호 10122)

☐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 제18조¹⁾는 원자로, 실험연구용 보석, 외국으로부터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터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의료용·농약 제조용 석유류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건부면세’란 반출 또는 수입 시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거나 반입 후에 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제도임.

참고로, 같은 법 제19조²⁾에서는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무조건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조건부면세 물품 가운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이하 생략)

2) 「개별소비세법」

제19조(무조건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이하 생략)

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개정안은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 첫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많은 양육자에게 확대하고, 양육비용을 일부 저감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가운데 첫째 아이가 61.3%에 해당하여 2016년 52.5% 대비 8.8%p 증가한 반면, 둘째 아이의 비중은 31.9%로 2016년 대비 5.8%p 감소하였음.

[출산 순위별 비중(2016~2024년)]

(단위: %, %p)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잠정)	'23년대비 증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첫째아	52.5	52.7	52.9	53.7	54.8	55.7	58.2	60.2	61.3	1.1
둘째아	37.7	37.5	37.6	36.9	35.9	35.5	33.7	32.3	31.9	-0.4
셋째아 이상	9.8	9.8	9.4	9.5	9.2	8.8	8.1	6.8	6.8	-0.7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 출산 순위 미상 제외

둘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 이상의 자녀”에서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한 입법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³⁾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⁴⁾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또는 2명 이상의 손자녀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세제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추후 자녀 계획 여부 및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아

3)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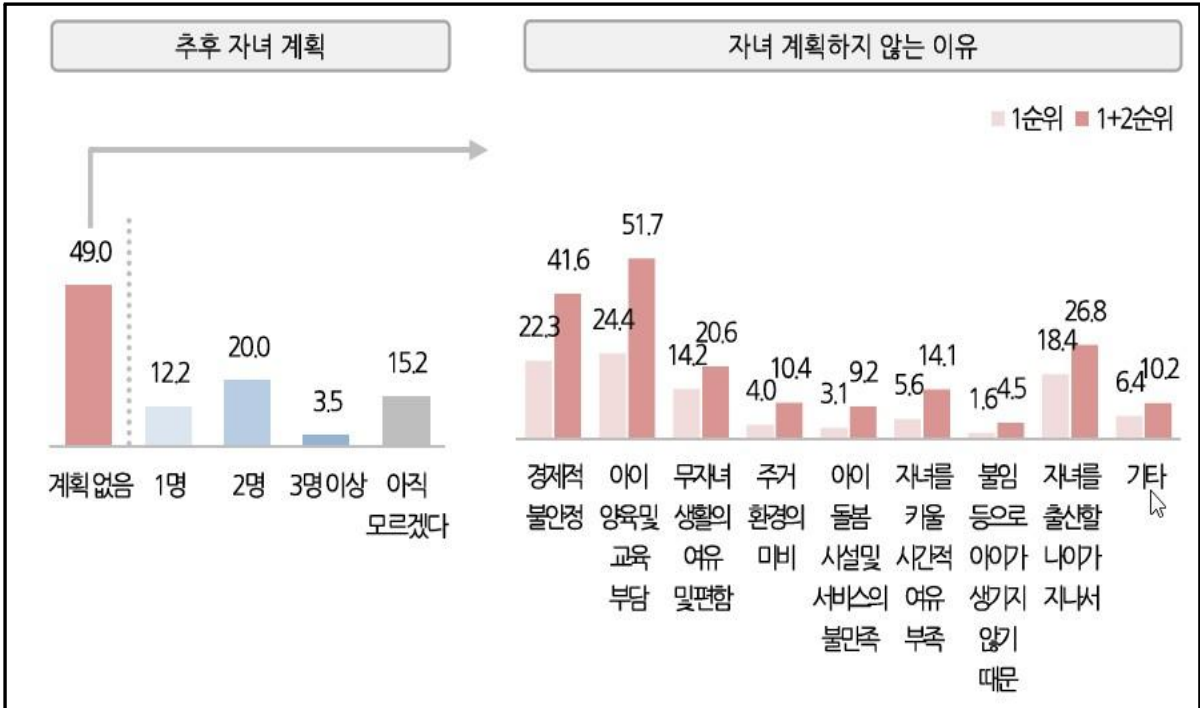
2.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다. 다자녀 가구	10퍼센트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u>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u>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u>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u>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고, '경제적 불안정'이 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가 18.4%로 조사⁵⁾되었음.

[추후 자녀 계획 여부 및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 조사결과]



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만 49세 이하를 사례수로 분석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 인식조사 보고서, 2023.1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과 다자녀 가구에서 구입하는 차량의 개별소비세 면세한도 완화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재정적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5) 「저출산 인식조사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실시, 2023.11.
- 조사대상 및 표본수: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79세 일반국민 1,200명 대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제도]

분야	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셋째,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 동 제도에 대한 평가와 재설계를 논의하기에는 정책 추진기간이 다소 짧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자녀가구 승용자동차 구입 관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범위를 현행 미성년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 자녀 양육자로 확대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6년 2,49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조 2,035억원(연평균 2,4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다자녀가구 승용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범위 확대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전체 세수효과	-2,499	-2,457	-2,415	-2,375	-2,289	-12,035	-2,407
개별소비세	-1,747	-1,718	-1,689	-1,661	-1,601	-8,416	-1,683
교육세	-524	-515	-507	-498	-480	-2,525	-505
부가가치세	-227	-223	-220	-216	-208	-1,094	-2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유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⁶⁾ 2건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차량의 개별소비세 면세 한도를 상향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임.⁷⁾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안도결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성일종의의원안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18세 미만 자녀 <u>2명 이상</u>	18세 미만 자녀 <u>2명 이상</u>	18세 미만 자녀 <u>2명 이상</u>
감면 한도	300만원	400만원	자녀 2명: 300만원 자녀 3명 이상: 한도없음	현행유지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의원 대표발의, 2024.7.23.)(의안번호 2202138)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024.8.23.)(의안번호 2203157)

7)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자녀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세수 감소 문제와 정부 내 합의 미도출 등을 이유로 현재 3자녀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현행 수준을 유지하려는 입장임. 또한, 해당 제도는 2023년 처음 시행되어 현재 2년 차에 접어들었고, 효과성과 세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통계 집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제도 시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이후 다자녀 기준 조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제418회 기획재정소위제5차, 2024.11.21.).

문 의 처

02)6788-5147
